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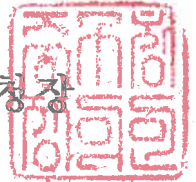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4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개정에 따라 제1조(목적) 수정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수정

-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위반행위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 추가
- ▶ 과태료 : 1차위반 1,000, 2차위반 2,000, 3차위반 3,000 (단위:만원)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의약과 의무팀), 전화 : 02-3396-6404, 팩스 : 02-3396-8910, 전자우편 : songjm123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현행	개정안
----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  
-----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0	2,000 0	3,000 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